

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3681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23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,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전문은행의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며, 질병관리청장 외에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장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질병관리청차장”을 “질병관리청장”으로, “위원장이”를 각각 “질병관리청장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“전문가 2명 이상을”을 “전문가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호”를 “제1호 및 제4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전문은행의 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

제12조제3항 중 “질병관리청장”을 “질병관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방법 및 절차”를 “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평가 방법 및 절차”로 한다.

제14조의2 중 “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·보존·관리”를 “질병관리청장 또는 전문은행의 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·보존·관리·제공”으로, “징수할 수 있다”를 “받을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장은 <u>질병관리청차장이</u>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위원장이</u> 지명하며,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<u>위원장이</u> 임명·위촉한다. 1. (생략) 2. 병원체자원의 수집·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.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 천하는 생명과학분야 <u>전문가</u> <u>2명 이상을</u> 포함하여야 한다. ⑤·⑥ (생략) 제10조(지정의 취소 등) ① 질병 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하고, 제2호 및 제3호의	제7조(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질병관리청장</u> ----- ----- <u>질병관리청장이</u> ----- ----- ----- <u>질병관리</u> <u>청장이</u>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. ----- <u>전문가</u> <u>를</u> -----. ⑤·⑥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지정의 취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제1호</u> <u>및 제4호</u> ----- -----

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제12조(기탁) ①·② (생략)

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 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기탁의 기준 및 방법·절차, 제2항에 따른 기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2(수수료)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·보존·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전문은행의 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기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질병관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-----

-----.

④ -----

----- 방법 및 절차, 제3항에 따른 사업의 평가 방법 및 절차 -----

-----.

제14조의2(수수료) 질병관리청장 또는 전문은행의 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·보존·관리·제공-----

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 료를 <u>징수할 수 있다.</u>	----- ----- ----- <u>받을 수 있다.</u>
--	---